


|   |                    |      |             |
|---|--------------------|------|-------------|
|  | <b>산업체겸임교원인사규정</b> | 규정번호 | 3-3-8       |
|   |                    | 제정일자 | 2001.03.01. |
|   |                    | 개정일자 | 2023.03.01. |
|   |                    | 개정차수 | 10차         |
|   |                    | 소관부서 | 교무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산업체 겸임교원의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임용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3년 이상)하고 있는 현직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다만,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관의 경우 부서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강의할 수 있는 자
5. 기타 필요시 연구실적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자

제3조(신규임용 직명) 산업체 겸임교원의 신규임용 직위는 겸임조교수로 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산업체겸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지 제4호와 같다. 다만, 산업체를 원 소속 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학과장 추천으로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겸임교원 추천시 학과장은 별지 제1호에 의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시기) 임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전반기 3월, 후반기 9월로 한다. 다만, 결원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시기에 총장이 규정에 의거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① 산업체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재임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제외자는 별도의 해임발령 없이 당연 퇴직한다.

④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신설 2023.03.01.>

제7조(해임) 산업체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학기에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2. 임용기간 내 별지 제3호 산업체 겸임교원 강의충실도평가표 ①의 평가점수가 36점미만이거나, ②의 평가점수가 20점미만인 경우
3. 산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4. 대학 겸임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7조의 2(현직보유의 의무) 산업체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임용 당시의 업체에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겸임교원이 현직에서 해직 또는 근무지를 변경으로 제2조 신규임용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산업체겸임교원은 자격상실일로부터 그 학기 종료일까지 강의를 계속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산업체겸임교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03.01.]

제8조(강의시간배정) 산업체 겸임교원은 주당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시간까지 배정할 수 있다.

제9조(강사료) 산업체겸임교원의 강사료는 강사료지급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임용인원의 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을 합하여 법정교원 정원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임용하되 그 인원은 전임교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2년 7월 31일 현재 겸임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자의 직명은 2012.8.1부로 겸임조교수로 하며,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현재의 직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제6조(임용기간) 제1항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임용 평정은 이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